

<논문>

宋代 提點刑獄司의 機能變化와 그 意味

서지영*

목 차

- I. 머리말
- II. 北宋代 提點刑獄司의 設置
 - 1. 設置 背景
 - 2. 置廢와 確立
- III. 南宋代 提點刑獄司의 機能變化
 - 1. 武臣 提點刑獄司의 任用과 活躍
 - 2. 財政關聯 業務의 增加
 - 3. 司法權의 擴大
- IV. 南宋 行政秩序 崩壞와 提點刑獄司 機能變化의 意味
- V. 맺음말

[국문 요약]

北宋 시기 提點刑獄司는 몇 번의 置廢과정을 거친 후 상설화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연락 수단으로서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통치를 강화시키는 데 중요한 영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南宋 시기 이르러 행정질서의 붕괴로 말미암아 提點刑獄司의 기능은 변화하게 된다. 첫째는 武臣 提點刑獄司가 단독으로 路의 장관직을 수행했다는 점이고, 둘째는南宋 시기에 이르면 提點刑獄司의 재정관련 기능이 향상되는 것, 셋째는 사법 방면의 권한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宋代 提點刑獄司 설치로 지방사법 질서의 공정성이 보다 높아졌으며 나아가 宋朝 법제발 달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北宋시기 지속되는 提點刑獄司의 置廢현상과南宋代 이르러 다양한 기능 변화를 통해 宋朝 행정질서가 北宋 초기부터 불안정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 경북대학교 역사교육대학원 석사 (sjy008007@naver.com)

보여준다. 또한 宋朝가 비록 唐朝 보다 더욱 발달된 고도의 중앙집권을 이루었지만 건국 초부터 멸망할 때까지 외환과 침략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宋朝의 중앙집권체제는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송대, 사법, 제점형옥사

I. 머리말

宋代는 唐 말·五代의 과도기를 거쳐 출현한 획기적인 시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그 이전과는 성격이 다른 발전적인 시대이다.¹⁾ 북송 초기 황제의 당면과제는 안사의 난 이후 할거하고 있던 절도사 세력을 누르고 전란으로 황폐화된 사회를 안정시켜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 일이었다. 이를 추진하려면 무엇보다도 강력한 중앙집권적 황제독재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하였고, 이러한 측면에서 문관이 국정을 담당하는 문신관료체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신관료체제와 황제독재체제는 중앙 및 지방의 관료제도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²⁾ 먼저 중앙에서는 재상권을 약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였으며³⁾ 이러한 운영은 지방 행정조직에서도 효과적으로 진행되어 황제권의 침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⁴⁾

지방 행정조직의 최고단위는 路⁵⁾이며, 路는 지방을 행정단위로 구분하기 보

-
- 1) 申採湜, 「宋代史 연구의 문제와 새로운 방향 모색」, 『東洋史學研究』 50(1995); 李錫炫, 「中國의 宋史 연구동향」, 『한국중세사연구』 20(2006).
 - 2) 申採湜, 「宋代 文臣官僚의 陞進에 대하여」, 『東洋史學研究』 8(1975); 申採湜, 『宋代官僚制研究 - 宋史列傳 分析을 통하여 -』(三英社, 1981); 高爽林, 「宋代의 지배계급 - 관료계급과 形勢戶를 중심으로 -」, 『慶北史學』 4(1982); 申採湜, 「宋 이후 皇帝權」, 『東亞史上의 王權』(한울아카데미, 1993); 曹福鉉, 「宋代 官員의 公使錢 研究」, 『東洋史學研究』 81(2003).
 - 3) 河上光一, 「皇帝獨裁權의 強化と官僚制」, 『宋代の經濟生活』(吉川弘文館, 1941[1966]).
 - 4) 屈超立, 「宋代地方行政管理制度改革簡論」, 『西南民族大學學報』(2004-11), 308면; 張晋藩, 임대희 외 옮김, 『중국법제사』(소나무, 2006).
 - 5) 『續資治通鑑長編』 卷2 癸酉, 太祖 建隆 2年 9月 12日 이미 ‘京畿東路’라고 칭하고 있다; 『宋會要輯稿』 食貨 49-2, 3 轉運, “太宗至道三年始劃定全國爲十五路, 又增三路, 共爲十八路: 京東路, 京西路, 河北路, 河東路, 陝西路, 淮南路, 江南東路, 江南西路, 荆湖南路, 荆湖北路, 兩浙

다는 監督을 구분하는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路를 담당하는 지방관의 조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중앙관의 권력구조와 병행하여 지방관들의 권한 역시 여러 관직에 분산시켜 권력 집중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⁶⁾ 路가 지방행정조직의 監督을 구분하는 성격을 띠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으며, 이는 路官 조직에서 나타나는 송대 지방조직상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⁷⁾ 따라서 路에는 독립된 장관은 없었고, 지방관을 감독하는 路官이 설치되었는데 이를 監司라고 하였다.

監司에는 安撫司, 轉運司(江·浙·荊·淮 發運使를 포함),⁸⁾ 提點刑獄司, 提舉常平司 등이 있다. 이들을 “帥司”, “漕司”, “憲司”, “倉司”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路의 軍, 政, 刑, 財의 권력을 가지며, 州縣을 아우르는 상위 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⁹⁾ 이러한 監司는 그 담당 구역에 대한 명확한 層級과 고정적인 정식구역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담당 범위와 그 경계 또한 분명하지 않았다.¹⁰⁾ 그 중 提點刑獄司는 提刑司, 憲司, 憲臺라고도 칭하기도 했으며, 司法, 監察, 人事管理, 民政, 治安, 軍事, 財政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¹¹⁾하였다. 이것은 監司의 직권 범위에 엄격한 구분을 두지 않게 함으로써 지방관이 특정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송대 提點刑獄司에 대한 연구¹²⁾는 주로 정치 제도사와 법제사 측

路, 福建路, 益州路, 梓州路, 利州路, 夔州路, 廣南東路, 廣南西路.”

6) 島田正郎, 임대희 외 3인 옮김, 『아시아법사』(서경문화사, 2000), 66면.

7) 申採湜, 앞의 책(각주 3).

8) 李鉉, 「宋初期 發運司에 관한 一問題－端拱年間の 置廢原因을 中心으로－」, 『釜大史學』 4 (1981); 黃純豔, 「論宋代發運使의 演變」, 『廈門大學學報』(2003-02); 李曉, 「宋朝江淮荊浙發運司의 政府購買職能」, 『中國社會經濟史研究』(2004-02); 金榮濟, 「王安石 新法과 地方財政－北宋代 財政集權의 地域差 問題와 關聯하여－」, 『東洋學』 40(2006); 金榮濟, 「宋代 發運使의 役割과 그 地位의 變化」, 『中國史研究』 50(2007), 160면 각주 2 재인용.

9) 『宋會要輯稿』食貨 42-58, “‘帥司’ ‘漕司’ ‘憲司’ ‘倉司’ 分掌了路一級軍, 政, 刑, 財之權, 總稱 監司, 爲州縣守臣頂頭上司, 所謂 “朝廷委郡縣於守令, 總守令於監司.”

10) 餘蔚, 「宋代地方行政制度研究」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2003), 15면.

11) 王曉龍, 『宋代提點刑獄司制度研究』(人民出版社, 2008).

12) 송대 提點刑獄司 연구동향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지영, 「송대 提點刑獄司에 대한 연구동향」, 『法史學研究』 38(2008)을 참조하기 바란다.

면에서 다루어져 왔다. 우선 정치 제도사 측면에서는 지방 행정 제도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路級관사로서 提點刑獄司제도가 제기되었다.¹³⁾ 이 외 지방의 감찰제도와 재정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提點刑獄司의 감찰과 재정기능에 관해 언급한 연구도 있다.¹⁴⁾ 법제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지방 사법기구로서 提點刑獄司의 기능에 관해 간략하게 제시되었다.¹⁵⁾ 이후 提點刑獄司의 구성, 사법심판 절차, 사법 감찰 직능에 이르는 사항과 神宗 元豐 정치개혁 후의 提點刑獄司의 체제개편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¹⁶⁾ 나아가 監司의 民事審判기능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提點刑獄司의 民事審判기능 수행에 대해서도 밝혀졌다.¹⁷⁾

송대 提點刑獄司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중국학계에서 시작되었다. 이제까지 선학들의 연구에 의해 提點刑獄司의 설치내력과 그 기능, 관원의 구성 등이 밝혀졌으며 사법 이외 일부 기타기능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¹⁸⁾ 최근 중국학자 王曉龍은 提點刑獄司의 監察, 人事管理, 民政, 軍事, 財政, 文化教育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밝혔으며, 특히 提點刑獄司의 司法기능에 주목하여 司法審判, 司法監察, 司法組織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나아가 송대 路제도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가 다원화·분권화되었음을 밝히고, 그러한 체제하에서 提點刑獄司의 역할에 대해 논하였다.¹⁹⁾

지금까지 提點刑獄司에 관한 연구는 그 작용과 기능을 살펴보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提點刑獄司는 사법적인 기능을 담당하여 설치된 官司

13) 梅原郁, 『宋代官僚制度研究』(同朋舍, 1985); 李之亮, 『宋代路分長官通考』(巴蜀書社, 2003); 餘蔚, 앞의 글.

14) 賈玉英, 『宋代監察制度』(河南大學出版社, 1996); 包偉民, 『宋代地方財政史研究』(上海古籍出版社, 2001).

15) 宮崎市定, 「宋元時代の法制と裁判機構」, 『アジア史研究』 4(1957); 徐道臨, 『中國法制史論集』, 志文出版社(1975); 張晉藩, 『中國法制通史·第五卷·宋代法制』(法律出版社, 1999).

16) 王雲海, 『宋代司法制度』(河南大學出版社, 1992); 郭東旭, 『宋代法制研究』(河北大學出版社, 2000); 戴建國, 『宋代法制初探』(黑龍江人民出版社, 2000).

17) 屈超立, 「論宋代轉運司的司法職能」, 『浙江學刊』(2003-4); 屈超立(임대희·서지영 역), 「전운사(轉運司)의 사법기능」, 『法學論叢』 28(2008).

18) 戴建國, 「宋代的提點刑獄司」, 『上海師範大學學報』(1989-2); 石濤, 「北宋提點刑獄司研究」, 『聊城大學學報』(2003-1).

19) 王曉龍, 앞의 책; 王曉龍, 「從提點刑獄司制度看宋代“路”之性質」, 『中國歷史地理論叢』(2008).

였으나 그 밖에도 지방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돌보았던 것이다. 提點刑獄司는 북송 초기 설치되어 몇 번의 置廢과정을 거쳤으며 북송 仁宗 明道 2년(1033)에 이르러 상설기구가 되었고, 이후 路級 관사로서 그 위치와 역할이 확립되어 갔다. 그러나 남송 초년의 전쟁과 이에 따른 행정질서의 붕괴로 말미암아 국가권력의 사회 파악능력은 극도로 저하되게 되었고, 이것은 곧 행정체계의 문란이라는 문제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런 상황은 지방통치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이로써 監司들의 역할과 그 작용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게 되며 더불어 提點刑獄司의 기능 또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와 사료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했던 문제, 남송시기 提點刑獄司의 기능변화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즉 남송시기 路級 監司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의 提點刑獄司 기능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북송 초기 설치된 提點刑獄司의 설치 배경과 반복되는 置廢상황 그리고 이후 확립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남송시기 변화하는 提點刑獄司의 기능을 다른 監司들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IV장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조망하여 남송시기 提點刑獄司 및 監司들의 기능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살펴봄으로써 남송 시대 路級 監司인 提點刑獄司에 대해 보다 다각도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 北宋代 提點刑獄司의 設置

1. 設置 背景

太祖 乾德元年(963) 轉運使²⁰⁾를 두었는데, 당시 轉運使의 설치목적은 단지

20) 龔延明, 『宋代官制辭典』(中華書局, 1997), 481면; 金諱, 김효민 옮김, 『중국과거문화사』(동아시아, 2003), 216면; 張晉藩 주편, 임대희 외 옮김, 앞의 책(각주 6), 524면; 조복현, 『송대 관원의

군사적인 필요성 때문이었으며, 군사들이 전쟁에서 귀환하고 나서는 轉運使를 폐지하도록 하였다.²¹⁾ 太宗 太平興國 2년(977) 節度使를 폐지하고, 그 대신 전국 각 路에 轉運司를 설치하여 행정업무를 全權 관리하게 하였다.²²⁾ 북송 초기 轉運使는 節도사를 대신하여 지방 행정을 수행하여 나간 것으로 보이며,²³⁾ 이후 지방의 財政과 民政 전반에 걸쳐 감독하였으므로 그 업무의 폭은 매우 넓었다고 할 수 있다.²⁴⁾

이후 계속해서 지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행정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따라서 轉運司, 提點刑獄司, 提舉常平司 등을 설치하여 어느 정도의 역할 구분을 두었으며, 그 이면에서는 그들의 職權을 분산시켜 서로 교차하는 국면을 형성시켜 나갔다. 또 서로 간에 협력하는 동시에 감독하고 견제하도록 하여 職權의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정제도의 정비는 지방 監司들의 職權 범위에 엄격한 구분을 두지 않게 함으로써,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었으며, 따라서 지방관의 권력 독점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었다.²⁵⁾

봉록제도』(신서원, 2006), 13면~14면).

- 21) 『文獻通考』卷61 職官十五, “其始除轉運使止因軍興專主糧餉, 至班師即停罷”; 王麗, 「北宋轉運使의 設置問題探討」, 『河南大學學報』(2001-6), 55면; 북송 초기 轉運使에 대해서는 戴揚本 『北宋轉運使考述』(上海古籍出版社, 2007), 51면~69면 참고.
- 22) 『文獻通考』卷61 職官十五, “自是而後, 邊防, 盜賊, 刑訟, 金穀, 按廉之任. 又節次以天下土地形勢, 俾之分路而治矣. 繼增轉運使判官, 以京官爲之, 於是轉運使於一路之事, 無所不總也.”; 戴揚本, 「北宋初期轉運使制度的演變」, 『中華文史論叢』(2007-01), 101면~102면.
- 23) 『續資治通鑑長編』卷42 至道 3年 12月條, “國初罷節鎮統支郡, 以轉運使領諸路事, 其分合未有定制, 是歲始定爲十五路.”; 河上光一, 앞의 글, 3면.
- 24) 『宋史』卷167 職官志 都轉運使, “都轉運使, 轉運使副使判官, 掌經度一路財賦, 而察其登耗有無, 以足上供及郡縣之費, 歲行所部, 檢察儲積, 稽考帳籍, 凡吏蠹民虞, 悉條以上達, 及專舉刺官吏之事.”
- 25) 餘蔚, 앞의 글; 徐東升, 「論宋代的監司關係—以轉運, 提點刑獄和提舉常平司爲中心」, 『江西社會科學』(2008-05).

〈표 1〉宋代 路의 監司 조직²⁶⁾

行政單位	監司	주 담당 업무
路	安撫司 (帥司)	軍事
	轉運司 (漕司)	財政
	提點刑獄司 (憲司)	司法
	提舉常平司 (倉司)	經濟

북송 초기 轉運司에서는 一路의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하였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처리해야 했다. 그 중 특히 형벌과 소송에 관련된 일은 복잡하였고, 그 처리 결과는 민심과 직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업무라 할 수 있다.²⁷⁾ 따라서 太宗 雍熙(984~987)년간 지방에 중앙관리를 파견하여 간단한 사건은 즉시 해결하도록 하였고, 큰 사건도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명하여 지방의 민심을 돌보았다. 만약 관리가 사건 처리를 지체하였다면 그 죄를 엄중히 묻도록 하였다.²⁸⁾ 太宗은 많은 政事 중에서도 특히 형벌과 소송에 관한 사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으며,²⁹⁾ 조정의 중앙관리를 각 지방으로 파견하여 형벌과 소송에 관한 사건을 살피게 하는 방식은 단지 일시의 효과만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형벌과 소송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官司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다.

太宗 淳化 2년(991) 각 路에 提點刑獄司를 처음으로 설치하게 되었다. 提點刑獄司가 처음으로 설치되는 太宗 淳化 2년(991)에서 提點刑獄司가 폐지되는 太宗 淳化 4년(993), 다시 설치되게 되는 眞宗 景德 4년(1007)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宋史』 「刑法志」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6) 任大熙 外, 「譯註『청명집』 「戶婚門」 卷六(下)」, 『中國史研究』 38(2005); 高橋芳郎, 『譯註 名公書判清明集 - 官吏門·賦役門·文事門 -』(北海道大學出版會, 2008)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27) 戴建國, 앞의 글, 93면.

28) 『宋史』 太宗紀一 雍熙元年 六月 己丑條, “小事卽決之, 大事趣令速了, 事有可了而官吏故違稽緩者, 輸其狀以聞”

29) 『宋大詔令集』 卷200 雍熙 二年 八月 遣使分路按獄卽決詔, “庶政之中, 獄訟爲切”

A. 太宗 淳化 초에 처음으로 각 路에 提點刑獄司를 두고 管內의 州府는 10일에 1회 囚人명부를 보고하도록 하고 의욕으로서 미결인 안건은 즉시 驛馬를 타고 가서 처리하게 했다. 주현에서 재판을 지체하거나 심리가 부실한 경우 책임이 長史에 있다면 황제에게 상주하여 탄핵하고 책임이 佐史나 小史에 있다면 상황에 따라 안핵하여 처리하도록 했다.³⁰⁾

위 내용으로 보아 太宗 淳化 초에 이르러 처음으로 각 路에 提點刑獄司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提點刑獄司는 관내의 州·府에서 10일에 1회 죄인들의 명부에 대해 보고받았으며, 미결안건이 있다면 역마를 타고 가서 즉시 처리하였다. 또 州·縣 단계에서 재판을 지체하거나 심리가 부실한 경우 이러한 문제를 황제에게 보고하여 부패한 관리들을 처단하는 역할도 하도록 하였다.

太宗 淳化 2년 提點刑獄司의 설치는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체제 강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가능한 많은 행정기관을 황제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두고 그 최종적인 결정권을 황제가 행하는 것으로 하여, 모든 국가 행정기능을 황제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고자 한 것이다. 중앙의 사법은 審刑院을 황궁 내에 두었으며,³¹⁾ 지방은 提點刑獄司를 설치하여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담당하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太宗 淳化 2년(991)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던 提點刑獄司는 淳化 4년(993) 폐지되고 담당했던 업무는 轉運司로 귀속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 『宋史』 卷199 刑法一 “淳化初，始置諸路提點刑獄司，凡管內州府十日一報囚帳，有疑獄未決，即馳傳往視之。州縣稽留不決，按讞不實，長史則劾奏，佐史·小史許便宜按劾從事”；朴永哲，『譯註：宋史刑法志』，『中國史研究』 19(2002)，370면.

31) 宮崎市定，「宋元時代の法制と裁判機構」，『アジア史研究』 4(1957)；黃玉環，「提點刑獄公事與審刑院 禦史台推勘官」，『貴州民族學院學報』(2005-05)；傅日晶，「試論宋代司法制度的發展」，『學術探索』(2006-03).

B-① …… 端拱(태종, 988-989) 이래 각 주의 司理參軍은 모두 황제 자신이 선임하였고 백성이 도성에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가 있으면 어사를 파견하여 驛馬를 타고 가서 조사하게 하였기 때문에 수년 동안 형벌이 淸省해졌다. 提點刑獄司가 平反한 일이 없어서 조를 내려 모두 파하고 提點刑獄司의 일을 轉運司에 귀속시켰다.³²⁾

B-② 태종 至道 2년(996) 각 주에서 사형으로 판결한 안건 중 의심스러운 것은 관계부서의 논박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그 안건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은 황제는 다음과 같은 조를 내렸다. “의문이 있는 사형안건은 판결 후 轉運司에게 상신하라. 轉運司는 법률을 잘 아는 부하를 선발하여 재결하게 하고 상주할 필요가 있는 것을 상주하라.”³³⁾

太宗은 淳化 3년(992) 조령을 내려 徒刑이상의 죄로 판결이 나온다면, 중앙관을 파견하여 직접 재심하도록 하였고, 안건의 대소를 불문하고 이를 주관하는 관리에게만 재판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 태종은 백성이 도성에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면 御史를 파견하여 역마를 타고 가서 조사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宋史』本紀를 살펴보면, 복송太宗에 의해 처음으로 시작되어 4대 仁宗 때까지, 御史를 파견하여 路의 형벌과 소송사건을 按察하게 하였고, 특히太宗 때에는 집중적으로 지방 路에 御史를 파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³⁴⁾

提點刑獄司제도는 시행된 지 약 2년 만에 폐지되었는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提點刑獄司는 폐지되게 되었고, 담당했던 일은 轉運司에 귀속되게 되었

32) 『宋史』 卷199 刑法一; 朴永哲, 앞의 글, 371면~372면.

33) 『宋史』 卷199 刑法一; 朴永哲, 앞의 글, 372면.

34) 太宗年間 路에 어사를 파견한 사례를 연대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984년 6월 己丑日 『文獻通考』166, 刑5: 985년 8월 癸酉日 『宋史』 5: 987년 正月 己卯日 『宋史』 5: 989년 5월 戊戌日 『續資治通鑑長編』 30: 990년 4월 庚戌日 『宋史』 5: 992년 5월 己酉日 『宋史』 5: 995년 5월 己日 『宋史』 5: 995년 4월 辛丑日 『續資治通鑑長編』 37(張南植, 앞의 글(각주 5), 93면 각주 4번 재인용).

다. 또 다른 폐지의 이유는 轉運司와 업무구분이 불명확하여 提點刑獄司 설치 이후에도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提點刑獄司제도 시행 초기 그 기능은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곧 폐지되고 말았던 것이다.³⁵⁾

眞宗은 咸平 2년(999)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C. 상과 벌이라는 두 가지의 권한은 백성을 統馭하는 재갈과 같은 것이다. 유공자에게 상을 주되 착오가 생길지라도,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벌의 시행에 합당함을 잃으면 백성들이 앞으로 어디에 호소하겠는가. 벌의 시행은 삼가 주의하고 또 중하게 알지 어다.³⁶⁾

즉, 眞宗은 형벌을 시행할 때에 유지해야 할 합법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종은 왜 그와 같은 점을 강조하였던 것일까? 당시의 법망은 너무 치밀하였고, 거기에 저촉될 때는 가혹한 처벌을 감수해야 하였다. 엄한 刑律은 後周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완화되기도 하였으나, 北宋代에도 대체로 답습되었고 이러한 엄혹한 형률은 冤獄의 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眞宗 景德 4년(1007) 형벌과 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관사인 提點刑獄司를 다시 설치하게 된다.

D. 眞宗 景德 4년(1007) 각 路에 提點刑獄官을 다시 두었다……³⁷⁾

眞宗은 轉運司가 一路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긴 하나 담당지역이 팽대하여 넓은 지역을 두루 살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太宗 때 提點刑獄司가 폐지되면서 그 담당했던 업무는 轉運司에 귀속되었는데, 이후 轉運司는 각 路의 유

35) 戴建國, 앞의 글(각주 20), 93면; 屈超立, 앞의 글(각주 19), 123면.

36) 『續資治通鑑長編』 卷45 眞宗 咸平 2年 8月; 張南植, 앞의 글(각주 5), 94면 재인용.

37) 『宋史』 卷199 刑法一; 朴永哲, 앞의 글, 373면.

일 一級관사가 되었고, 담당범위 안에서 재정, 사법, 감찰 등의 많은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따라서 眞宗은 轉運司로 업무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提點刑獄司를 다시 설치하였으며 형벌과 소송에 관한 업무를 맡게 하고 적절한 인물을 선발하여 提點刑獄官으로 임명하여 엄혹한 형률의 적용과 冤獄을 방지하도록 하여 민심을 돌보고자 한 것이다. 眞宗시기에 이르면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토지 문제에 상응하는 각종 소송사건이 늘어나게 되는데³⁸⁾ 이러한 이유도 提點刑獄司가 다시 설치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2. 置廢와 確立

眞宗이 사망(1022)하자, 13세의 어린 태자 趙禎이 즉위하여 북송 제4대 황제 仁宗이 되었다. 이후 어린 仁宗을 대신하여 劉 황태후가 10여 년간 섭정을 맡게 되어 이 시기 국가의 大權은 劉 황태후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³⁹⁾ 劉 황태후 섭정 시기를 포함하여 약 40여 년간의 仁宗 제위 기간에(1023~1063), 提點刑獄司는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었는데, 그러한 연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북송 仁宗 天聖 초만 하더라도 提點刑獄司는 一路의 중요한 司法審判·司法監察 기구였다. 그러나 仁宗 天聖 6년(1028) 提點刑獄司는 폐지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續資治通鑑長編』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E. 提點刑獄官의 소임이 지나치게 번거롭고 시끄러운 데다가 일을 처리하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⁴⁰⁾

提點刑獄司 폐지 이유에 대해 비교적 간략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단

38) 牛傑, 「宋代好訟之風產生原因再思考—以鄉村司法機制爲中心」, 『保定師範專科學校學報』(2006-01), 45면.

39) Ann Paludan, 이동진·윤미경 옮김, 『중국황제』(갑인공방, 2004), 134면.

40) 『續資治通鑑長編』 卷106, 天聖 6年 正月 戊午, “或言提點刑獄官過爲煩擾, 無益於事故也.”

지 提點刑獄官이 지나치게 번거롭고 무질서하며 무익하다는 이유였다. 『宋大詔令集』廢提刑詔에는 提點刑獄司 폐지 이유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F. 國家는 수천만의 가정을 걱정하고 임금은 무수한 백성을 길어 굶어 살피기에 각지로 파견한 칙사들을 통해서 어명을 하달하고 감옥을 설치해 반란을 꾀하는 자들을 평정하려고 하나 허구한 세월이 흘렀는데도 관원들의 사이가 여전히 협조적이 못 되고 복잡하다는 말들이 按察使들의 입에서 새어 나오니 이러한 폐단이 더욱 범람하고 커질까 우려된다.⁴¹⁾

『宋大詔令集』에서는 지방 관원들이 서로 협조하지 않아 提點刑獄司 제도가 잘 운용되지 않고 복잡하다 하여 그 폐단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조정에서는 提點刑獄司를 폐지하였으며, 당시 提點刑獄司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轉運司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였다. 위에서 제시된 『續資治通鑑長編』과 『宋大詔令集』廢提刑詔에서 나타나는 提點刑獄司 폐지 이유는 단지 표면상의 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연계시켜 그 폐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북송 太宗대에 이르러 과거합격자의 증가와 잦은 恩蔭등으로 入仕의 경로가 확대되어 관원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⁴²⁾ 특히 眞宗 景德 초년부터 仁宗 慶曆 6년에 이르는 시기의 관원 수는 대략 2배 정도 증가하였다.⁴³⁾ 이러한 관원 수의 증가로 말미암아 관원들의 봉록에 많은 재정을 지출하게 되었고, 국가 재정은 점점 궁핍해지게 되었다. 국가 재정의 궁핍 현상은 眞宗 말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며, 仁宗 시기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졌던 것이다.

41) 『宋大詔令集』卷161, 天聖 6年 正月 戊午 廢提刑詔, "國家憂勤萬萬, 欽恤群黎, 爰分命於使車, 冀平反於狂獄, 而歲序斯久, 官局爲煩, 仍聞按察之間, 或致滋彰之弊"

42) John W. Chaffee(양중국 옮김), 『송대 중국인의 과거생활-배움의 가시밭길-』(신서원, 2001), 97면; Ann Paludan(이동진·윤미경 옮김), 앞의 글, 131면; 조복현, 앞의 책(각주 22), 40면.

43) 조복현, 앞의 책(각주 22).

이러한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打開하기 위해 仁宗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官司와 해당하는 官員을 廢하였 던 것이라 생각된다. 轉運司와 提點刑獄司는 一路의 一級官司로써 그 직능 면에서 일정 부분의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였는데, 轉運司는 提點刑獄司 설치 이후에도 일부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⁴⁴⁾ 仁宗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초기부터 의도적으로 轉運司에게 더 많은 지방 사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이 때문에 提點刑獄司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상당히 줄어들어 그 설치 목적을 잃어갔던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仁宗 天聖 6년(1028) 提點刑獄司는 다시 폐지되게 되었고 담당했던 업무를 轉運司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였다.

提點刑獄司를 폐지한 지 1년 후인 仁宗 天聖 7년(1029)에 이르러 轉運司 한 곳에서 지방 民事를 돌보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G. 모든 路로 倂된 提點刑獄官을 폐지하고 나니 益·梓·廣南 등 지역에 다만 轉運使 한 사람 뿐이어서 民事를 끌고루 살필 수 없다는 의논이 제기되어 그 해 6월 壬辰 일에 益·梓·廣南 路에 轉運判官을 배치하고 轉運使와 나누어 순행시찰을 하도록 하였다.⁴⁵⁾

轉運司의 담당 업무가 늘어나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면밀히 살필 수가 없게 되자, 그에 대한 대책으로 轉運判官을 두도록 하였다. 提點刑獄司의 폐지로 인해 轉運司의 업무가 늘어나는 폐단이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仁宗 天聖 8년(1030) 9월 提點刑獄司를 다시 설치하게 되었다.

H. 癸醜일에 다시 모든 路에 提點刑獄官을 배치하되 종전대로 그들이 오간다고 해서

44) 徐東升, 「論宋代的監司關係—以轉運, 提點刑獄和提舉常平司爲中心」, 『江西社會科學』(2008-05), 58면.

45) 『續資治通鑑長編』 卷108, 仁宗 天聖 7年 6月 壬辰, “議者以爲自罷諸路提點刑獄, 而益·梓·廣南止一轉運使, 不能周知民事, 於是當年六月壬辰, 置益·梓·廣南路轉運判官, 與轉運使分部按巡.”

영접을 하거나 환송하지 말 것이며 그에 예속된 관리들의 수는 옛 법대로 감축하라.⁴⁶⁾

위와 같이 모든 路에 提點刑獄官을 다시 두었으나 불과 10일 후에 폐지되었다.⁴⁷⁾ 인종 초 1028~1030년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提點刑獄司의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었는데, 이것은 劉 恒태후 섭정 시기 동안 일관성 없는 정책집행의 폐해라 思料된다.

이 후 明道 2년(1033)에 이르러 仁宗의 親政이 시작되었으며, 그 해 12월 提點刑獄司를 다시 설치하게 되었다. 仁宗은 대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I. 모든 路에 刑獄등의 사항에서 提點官[提點刑獄官]을 폐지하고 나자 轉運司 한 곳만으로는 모든 사건들을 일일이 다 심사하거나 판결할 수 없어 제 때에 해결 되어야 할 일들이 지연되면 억울한 안건들이 쌓여서 범람될까 우려되니 반드시 어질고 사리에 밝으며 청렴하고 능력이 있으며 일을 그르치지 않을만한 사람을 물색해서 위임하면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을 것이다. 또 다시 모든 路에 提點刑獄官을 두되 예전같이 武臣들을 잘 골라서 등용하라.⁴⁸⁾

仁宗은 州·縣의 刑獄사건을 轉運司 한 곳에서만 처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여 모든 路에 提點刑獄司를 다시 두도록 하였다. 한편, 이는 轉運司의 권한 확대를 우려한 처사라 생각된다. 이로써 仁宗시기 提點刑獄司는 2번에 걸쳐 그 설치와 폐지가 반복된 것이다. 이후 仁宗 明道 2년(1033)에 이르러 提點刑獄司는 路級의 상설기구가 되었으며, 남송이 멸망할 때까지 폐지되지 않는다. 이후 때때로 置廢가 반복된 것은 단지 武臣 提點刑獄官이었던 것이다.

46) 『續資治通鑑長編』 卷109, 仁宗 天聖 8年 9月 癸醜, “癸醜, 復置諸路提點刑獄官, 仍令所至毋得送迎, 其吏人約舊數裁減之.”

47) 『續資治通鑑長編』 卷109, 仁宗 天聖 8年 9月 癸醜, “不十日又廢不行.”

48) 『續資治通鑑長編』 卷113, 明道 2年 12月 丙申, “諸路刑獄既罷提點官, 轉運司不能一一躬往讞問, 恐寢致冤濫, 宜選賢明廉幹不生事者委任之, 則民受其賜矣, 乃復置諸路提點刑獄官, 仍參用武臣.”

明道 2년(1033) 다시 설치된 提點刑獄司는 一路를 감독 관리하는 고층 행정 조직이 되었으며 轉運司와 提點刑獄司로 하여금 해당 州·縣지역을 나누어 안찰하고 서로 관리감독하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仁宗 대 몇 번의 置廢과정을 겪고 나서 提點刑獄司의 기능은 매우 확장되게 되며 그것은 司法, 監察, 民政, 治安, 軍事, 財政 등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송대 提點刑獄司의 대부분 기능은 仁宗조 시기에 구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仁宗이 재위 40년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황족의 자제인 趙曙가 황제의 자리를 이으니, 이가 바로 英宗이다. 英宗이 재위 4년 만에 병사하여, 太子 趙項이 즉위하여 神宗 皇帝가 되었다.⁴⁹⁾ 神宗 초년 조정에서는 이미 提點刑獄司제도 개혁을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熙寧 元年(1068) 正月에 神宗은 다시 武臣 提點刑獄官을 둔다는 조서를 내렸다.⁵⁰⁾ 武臣 提點刑獄官은 대체로 당시 지방의 刑獄사건과 治安形勢와 연관되어 있고 따라서 그 권력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였다.

熙寧 2년(1069)의 2월 神宗은 왕안석을 參知政事로 임명하여 그가 시행한 개혁의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었다. 왕안석은 이미 武臣 提點刑獄官은 까다로운 법률조문을 알지 못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인종 嘉祐 3년(1058) 일찍이 江南東路 提點刑獄官⁵¹⁾에 부임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⁵²⁾ 따라서 왕안석은 武臣 提點刑獄官의 폐단에 대해 인식하고, 神宗 熙寧 2년 11월(1069년) 모든 路의 武臣 提點刑獄官을 廢하였다.⁵³⁾ 北宋 후반기에 이르면 격렬한 당쟁 싸움이 일어나, 정부의 정책은 매번 변화되게 된다. 일관성 없는 정책과 혼란한 정치 상황 때문에 提點刑獄司의 기능은

49) 중국사학회 엮음, 강영매 옮김, 『중국역사박물관』(범우사, 2004), 44면.

50) 『太平治迹統類』 卷30, 熙寧 元年 正月; 神宗은 武臣 提點刑獄官을 두는 이유를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王曉龍, 『宋代提點刑獄司制度研究』 河北大學博士學位論文(2006), 33면].

51) 『續資治通鑑長編』 卷188, 嘉祐 3年 10月 甲子, “提點江南東路刑獄, 祠部員外郎王安石爲度支判官”; 李之亮, 앞의 책, 1582면.

52) 제임스 튜, 이범학 옮김, 『왕안석과 개혁정책』(지식산업사, 1992), 16면; 장국화, 임대희 외 옮김, 『중국법률사상사』(아카넷, 2003), 487면.

53) 『宋史』 卷14 神宗本紀一 熙寧 2年, “罷諸路提刑武臣”

끊임없이 변화하고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송시기에 이르러 더욱 확연히 나타나게 된다.

Ⅲ. 南宋代 提點刑獄司의 機能變化

1127년 東京 開封이 함락된 이후 南渡한 高宗 중심의 宋室 및 집권세력들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紹興 4년(1134) 臨安을 임시도읍으로 정했다. 그러나 金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南京 應天府에서 揚州로 다시 杭州로 南下했다가 이어 일시적으로 浙東 남부의 溫州에까지 피난하고 나서 臨安으로 재차 복귀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후에도 金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따라서 이 시기 정치상황은 그만큼 유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武臣 提點刑獄官의 任用과 活躍

남송시기 提點刑獄司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선 武臣 提點刑獄官이 등장하여 단독으로 지방 사무를 돌보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북송 시기 提點刑獄官에는 文臣을 임명하였고 武臣으로 하여금 보좌하도록 하였는데 남송 孝宗시기에 이르면 武臣 提點刑獄官이 단독으로 路에 파견되어 지방 사무를 돌보게 된다.⁵⁴⁾ 다음 <표2>는 武臣 提點刑獄官의 置廢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54) 王曉龍, 앞의 글(각주 60), 62면.

〈표 2〉 武臣 提點刑獄官 置廢상황⁵⁵⁾

1007~1028	1033~1060	1068~1069	1120~1126	1127~1130	1170~1189		
武臣 提點刑獄官 置				武臣 提點刑獄官 廢			

남송 초기 金軍과의 전쟁에서 提點刑獄司의 관원이 참전하여 직접 지휘하는 등의 활약을 하게 된다. 지속적인 전쟁의 국면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였고, 이에 상응한 조치로 武臣 提點刑獄官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군대를 인솔하여 전쟁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각지 變亂集團⁵⁶⁾의 소동으로 혼란해진 상황을 진압하기도 하였다. 계속되는 金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高宗 建炎元年(1127)에는 모든 路에 文·武 提點刑獄官을 동시에 두고 즉각적으로 군대를 지휘하여 전쟁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즉 남송 초기의 文·武 提點刑獄官은 전쟁 시 군대를 지휘하고 수많은 變亂集團을 진압하여 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등 남송 지방의 통치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공헌을 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武臣 提點刑獄官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군대를 통솔하여 전쟁을 치르는 능력이 文臣 提點刑獄官에 비해 우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軍이 퇴각하자 高宗은 武臣 提點刑獄官을 폐하게 되는데,⁵⁷⁾ 그 표면상의 이유로 생각되는 것은 武臣 提點刑獄官이 民事, 刑獄案件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졌으며, 또 지방 행정 실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55) 戴建國, 앞의 글(각주 20); 餘蔚, 앞의 글(각주 12); 王曉龍, 앞의 글(각주 60)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56) 變亂集團이란 政府에 대해서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掠奪·殺人·放火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였기 때문에 당시인 들로부터 盜賊·強盜·寇·賊 등으로 불린 집단을 말한다. 南宋 初期에는 중국 각처에서 수많은 變亂集團이 출현하였는데 高宗 建炎元年(1127)부터 紹興11년(1141)에 이르는 15년 동안 무려 373개의 집단이 출현하였다[金容完, 「南宋 初期의 民間 武裝集團 研究 - 紹興 11年 以前의 反政府集團을 中心으로 -」, 『湖西史學』 25(1998); 金容完, 「南宋 初期의 變亂集團에 關한 研究 - 鍾相·楊么集團을 中心으로 -」, 『인문학연구』 28(2001) 참고].

57) 『宋史』 卷26 高宗本紀三, 高宗 建炎 4年 “以金兵退, 肆赦 …… 罷諸路武臣提點刑獄”

때문일 것이다.

이후 孝宗 乾道 6년(1170) 조정에서는 武臣 提點刑獄官을 다시 두었는데,⁵⁸⁾ 高宗이 폐지한 지 40여 년이 지난 후였다. 孝宗은 武臣 提點刑獄官을 다시 두면서 다음과 같이 그 선임을 신중히 하였다.

J. 마땅히 공명정대하고 청렴하며 法술에 익숙하고 民事의 일을 잘 아는 사람을 선발해서 관리로 등용해야 한다.⁵⁹⁾

이번의 武臣 提點刑獄官은 모든 路에 두지 않았을 뿐더러 적당한 인물이 없으면 파견조차 하지 않았다. 또 그 選任에서 더욱 신중을 기함으로써 武臣 提點刑獄官은 民事, 刑獄案件을 처리하는 등 지방 사무에 어느 정도 개선된 부분이 있었다.

孝宗이 다시 武臣 提點刑獄官을 두게 된 것은 그들이 군대를 통솔하여 전쟁을 치르다가나 도적을 잡는 등의 치안 방면에서 文臣보다 우세하였기 때문이었으며, 孝宗 당시의 武臣 提點刑獄官은 지방 통치 정세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孝宗의 지지를 바탕으로 武臣 提點刑獄官의 지방 사무 처리 능력은 향상되어 갔고, 따라서 그 위치와 작용은 날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후 孝宗은 武臣 提點刑獄官을 단독으로 一路에 파견하여 행정을 돌보도록 하였으며 司法, 行政, 民政, 治安, 財政事務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孝宗 당시 武臣 提點刑獄官은 路의 監司 중 유일한 武臣 장관으로서 그 지위는 더욱 향상되는 추세에 있었다. 武臣 提點刑獄官이 路의 장관이 되고 그 지위가 향상되자 文臣들의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文臣들은 武臣이 路의 장관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武臣 提點刑獄官의 폐단을 황제에게 끊임없이 상소하였다.⁶⁰⁾ 따라서 孝宗 淳熙 말년(1189) 武

58) 『宋史』 卷34 孝宗本紀二, 孝宗 乾道 6年 “復置武臣提刑”

59) 『建炎以來系年要錄』 卷28, 建炎 3年 10月 戊戌, “須選差公廉, 曉習法令, 民事之人”

臣 提點刑獄官을 폐하게 되고 이후 다시는 두지 않게 되었다.

2. 財政關聯 業務의 增加

南宋 시기에 이르면 提點刑獄司에서 提舉常平司⁶¹⁾의 업무를 재차 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다음 <표 3>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 高宗 建炎 元年(1127)부터 高宗 紹興 15年(1145)까지 提舉常平司의 置廢상황⁶²⁾

시기	설치·폐지	출처사료	비고
高宗 建炎 元年(1127)	提舉常平司 廢	『建炎以來系年要錄』卷7, 建炎 元年 七月 己亥	提舉常平司의 업무를 提點刑獄司로 귀속시키고 市舶司의 일은 轉運司로 귀속시킴
高宗 建炎 2年(1128)	提舉常平司 置	『建炎以來系年要錄』卷17, 建炎 二年 八月 癸醜	地方財政의 관리가 힘들어지고 監司에서 함부로 재물을 사용하는 폐단이 나타나 提舉常平司를 다시 두게 됨
高宗 紹興 3年(1133)	提舉常平司 廢	『建炎以來系年要錄』卷62, 紹興 三年 正月 己未	提點刑獄司에서 提舉常平司의 업무를 겸하도록 함
高宗 紹興 8年(1138)	提舉常平司 置	『宋史』卷167 「職官七」	
高宗 紹興 9年(1139)	提舉常平司 廢	『建炎以來系年要錄』卷132, 紹興 九年 九月 庚寅	提舉常平司의 업무를 提點刑獄司에게 겸하도록 함
高宗 紹興 15年(1145)	提舉常平司 置	『建炎以來系年要錄』卷154, 紹興 十五年 八月 己亥	提舉常平司의 업무는 提點刑獄司에서 맡았으나 獄訟에 관한 업무가 너무 많아 다시 提舉常平司를 설치함

60) 王曉龍, 앞의 글(각주 60), 62면.

61) 송대 독자적인 제도 중의 하나인 提舉常平司제도는 王安石의 新法실시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그 이후 변천을 거듭하였다. 轉運司가 장악하는 제정은 주로 국가재정이고 중앙의 三司에 속하는 것이었으나 提舉常平司에서 장악하는 바는 지방재정으로 본래 중앙의 재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賈玉英, 『宋代提舉常平司制度初探』, 『中國史研究』(1997-03); 包偉民, 『宋代地方財政史研究』(上海古籍出版社, 2001); 宋炯, 『宋代提舉常平司의 沿革與財政體系的變化』, 『安徽史學』(2002-01)].

62) 賈玉英, 『宋代提舉常平司制度初探』, 『中國史研究』(1997-03); 宋炯, 『宋代提舉常平司의 沿革與財政體系的變化』, 『安徽史學』(2002-01); 餘蔚, 앞의 글(각주 12); 王曉龍, 앞의 글(각주 60)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표 3>에서 살펴보았듯이 南宋 高宗 초년부터 약 18년에 걸쳐 提舉常平司는 그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었다. 그러다가 紹興 15년(1145)에 이르러 비로소 모든 路에 提舉常平司가 다시 설치되고 監司적 지위를 회복하게 되며 이후 남송 말년까지 폐지되지 않는다. 남송 초기 거둬지는 提舉常平司의 폐지 때문에 그 업무를 재차 提點刑獄司에서 감독하고 관리하게 되었고, 따라서 紹興 15년 이후에도 提點刑獄司는 여전히 提舉常平司의 직무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남송 시기 提點刑獄司의 재정관련 직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南宋시기 막대한 군비지출 상황은 중앙재정을 더욱 빈곤하게 만들었고 이에 조정에서는 지방의 조세징수를 더욱 늘려 갔다. 특히 軍餉을 위한 總領所⁶³⁾의 설치와 그 운용, 전비 마련을 위한 지방 분담금으로서 經總制錢등이 창출되었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의 빈곤은 더욱 심해졌다. 路의 監司들은 본래의 기능보다는 중앙재정을 채우기 위한 조세 징수에 관련된 업무에 치중하였고 그 중 提點刑獄司에서는 주로 路의 經總制錢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提點刑獄司에서 經總制錢을 감독한다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법률조문에도 제시되어 있다.

K. 여러 經總錢物은 提點刑獄司에서 매월마다 모든 州의 빈부상황을 잘 따져 보고 숨겼거나 누락된 것이 없는지, 보태거나 삭감된 것이 없는지를 잘 확인한 후 尙書戶部에 사실대로 보고함을 준수해야 한다.⁶⁴⁾

經總制錢은 經制錢과 總制錢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經制錢은 북송 徽宗 政和년간(1111~1117)에 성립하였고 欽宗 靖康원년(1126)에 이르러 한때 폐지되고, 남송 高宗 建炎 2년(1128)부터 다시 행해졌다. 무엇보다 전쟁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함이었으며 점차 남송 중요 재정수입이 되었다. 한편, 總制錢은

63) 남송대는 總領所는 戶部の 出先기관으로서 군수재정을 담당하였으며, 4개의 總領所를 두고 이것이 각자 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직접 군량을 조달하여 보급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64) 『慶元條法事類』 권30 「經總制」, “諸經總錢物, 提點刑獄司每月抽滴諸州分康歷點勘, 有無隱漏, 增減不實, 保明申尙書戶部.”

남송 高宗 紹興 5년(1135)부터 시행된 것으로 각종 雜稅를 합칭하여 總制錢이라고 하였다. 總制錢은 새로운 세목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세목에 근거하여 단편적인 稅錢을 모은 것으로 지방 州·縣의 잡다한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和賣와 더불어 남송시기 독특한 조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남송 중앙재정과 4개의 總領所를 유지하는 주요한 재정 수입원이었다.⁶⁵⁾

3. 司法權의 擴大

남송시기에 이르면 提點刑獄司의 사법관련 기능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즉 提點刑獄司의 사법권한이 더욱 확장되어 轉運司의 담당 업무 및 다양한 民事⁶⁶⁾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다음 『宋會要輯稿』職官에서 轉運司와 提點刑獄司의 담당업무를 확인해보자.

L. 朝廷에 설치한 각 부서 사자들의 직책은 王命을 똑똑히 하달하며 관리들과 지방을 청렴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하지만 각자 모두 맡은 소임이 다른 바 婚田稅賦는 轉運[轉運司]에서 맡아서 처리할 것이요, 獄訟經總은 提刑[提點刑獄司]에서 맡아 처리할 것이며, 常平茶鹽은 提舉[提舉常平司]에서 맡아서 일을 볼 것이고, 兵將盜賊은 安撫[安撫司]에서 책임지고 다스릴 것이다.⁶⁷⁾

위 사료에서 주목할 점은 婚田의 업무는 轉運司, 獄訟⁶⁸⁾의 업무는 提點刑

65) 金榮濟, 「唐·宋代 上供의 증대과정 -특히 宋代의 常平倉·和買·和糶 등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36(1991), 98면; 金榮濟, 「唐宋 財政史 -租稅를 중심으로-」 [신서원, 1995(2005)], 362면; 趙東元, 「宋代州縣의 經濟統計」, 『釜大史學』 21(1997), 193면; 金榮濟, 앞의 글, 182면.

66) 民事안건이라 함은 개인들 간의 재산관계와 인간관계로 인해 발생한 분규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안건이 주를 이루었는데 婚田詞訟이 그 예이다. 刑事안건을 일컫는 것으로는 각종 정부 규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를 한 것에 대해 刑事처벌한 법률안건이다. 提點刑獄司에서는 民事와 刑事안건에 대한 심판기능이 있었으나 대부분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된 안건인 刑事안건을 다루었다[王曉龍, 앞의 글(각주 60), 116면].

67) 『宋會要輯稿』職官45-42, “朝廷置部使者之職, 俾之將王命以廉按吏治, 至於職事則各有攸司, 婚田稅賦則隸之轉運, 獄訟經總則隸之提刑, 常平茶鹽則隸之提舉, 兵將盜賊則隸之安撫.”

獄司라고 제시된 점이다. 즉 路 단위에서 婚田에 관련된 民事 업무는 轉運司에서 獄訟에 관련된 刑事 업무는 提點刑獄司에서 담당하였다.⁶⁹⁾ 그러나 당시 민사·형사 사건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았고, 각 監司는 모두 일정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轉運司와 提點刑獄司에서 처리하는 사법업무의 구분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提點刑獄司에서는 獄訟 안건의 심리를 주로 담당했으며, 민사안건을 직접 접수하거나 심판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提點刑獄司에서 일찍이 민사안건의 심판권한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路에서 民事 안건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轉運司에서, 刑事 안건의 경우 일차적으로 提點刑獄司에서 먼저 심사해야 했다.⁷⁰⁾ 즉 婚田분쟁 등의 民事 안건은 轉運司에서 獄訟에 관한 刑事안건은 提點刑獄司에서 우선하여 관리하고 심판하였다.

轉運司와 提點刑獄司의 사법안건처리에 관한 사례를 남송대 판례집인 『名公書判清明集(이하 약칭 『清明集』)』⁷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清明集』에는 남송 후기 路의 사법감독관이었던 提點刑獄官을 비롯한 지방 판관들의 판결원문이 수록되어 있다.⁷²⁾ 당시 사법·재판은 행정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
- 68) 재판은 옛날부터 獄訟이라 하여 刑事와 民事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구태어 말하면 전자인 獄은 斷獄, 후자인 訟은 聽訟이라고 할 수 있다[島田正郎, 임대회 외 3인 옮김, 앞의 책(각주 8), 79면].
- 69) 송대 刑事사건의 경우 관료체계에 따라 상부에 보고 없이 종결될 수 없으며 民事사건의 대부분은 縣까지만 보고되어 종결되었다. 따라서 소송인들은 民事사건을 상부(路의 監司 또는 中央)에까지 가기위해(공격, 절도 등을 주장하여)사건을 과장하였다[小口彦太, 임대회 역, 「전통 중국의 법제도」, 『역사교육논집』 16(1991); Carol G. S. Tan, 김진경 역, 「清末 訴訟의 再考」, 『법을 통해 본 중국사』(중국사학회 제9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2008), 65면].
- 70) 路에서 民事안건의 소송절차는 1차는 轉運司, 불복하는 경우 提點刑獄司, 提舉常平司, 安撫司 혹은 이웃 路의 監司의 순으로 옮겨진다. 刑事안건의 경우에는 1차 提點刑獄司, 불복하면 轉運司 등의 순서로 옮겨진다. 따라서 民事안건의 소송절차에서는 轉運司가 刑事안건의 소송절차에서는 提點刑獄司가 제일 중요한 심판기구였다[屈超立, 앞의 글(각주 19); 屈超立, 임대회·서지영 역, 「전운사(轉運司)의 사법기능」, 『法學論攷』 28(2008), 623면].
- 71) 祖慧, 「論宋代胥吏的作用及影響」, 『學術月刊』(2002-06); 高橋芳郎, 임대회 譯, 「名公書判清明集」, 『법사학연구』 27(2003); 朴淳坤, 「名公書判清明集을 통해 본 宋代 地方胥吏의 모습」, 『법사학연구』 31(2005); 송대 법률교육에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McKnight Brian E, *Law and order in Sung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New York, 1992) 참조.

재판은 행정의 중요한 일부였고, 이러한 사법행정은 어버이에 의해 자식에게 배풀어지는 끊임없는 보호적 측면과 같은 것이었다.⁷³⁾ 지방관들의 판결문을 통해 당시의 법 운용의 실태, 재판과 사법 행정의 실태 등과 같은 문제들을 구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시되는 판결문은 『清明集』에 나오는 提點刑獄官 蔡抗⁷⁴⁾의 판결문이다. 이 사건의 최종 심판하는 提點刑獄官 蔡抗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

M. 본 안건은 齊元龜가 業[田地]에 관하여 소송한 사건이다. 본 州의 僉廳의 판단과 본 官司[提點刑獄司]의 檢法官의 원안[擬]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하늘 아래 어찌 아버지가 두 명이고, 그 근원이 둘이 되는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생부)가 양육한 은혜는 본디 깊으나, 繼承한 의리 또한 중한 것이다. 繼承한 경우, 生父를 사사로이 가까이 하거나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卑幼의 재산이 尊長에 의해 盜賣된다면 연한에 관계없이 고소하는 것을 허락한다. 齊元龜가 齊公묘의 사후에 소송했다 하더라도 역시 改正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官司[提點刑獄司]에서는 轉運司[運司]의 담당사항을 침범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판결하기 어렵다. 증명서를 齊元龜에게 급부하고, 다시 州를 거쳐 소송하기를 바란다.⁷⁵⁾

위 사건은 出繼⁷⁶⁾하여 다른 이의 養子가 된 齊元龜라는 자가, 자신의 生父

72) 任大熙, 林炳德, 金仙慇, 『韓國에서의 中國 法史研究의 現況과 展望』, 『歷史教育論集』 36 (2006), 471면.

73) 滋賀秀三, 『中國의 傳統的인 法執行 方式에 關한 考察』, 『사법행정』 21(1980), 59면.

74) 『宋史』 권420 列傳179; 蔡抗, 자는 仲節, 호는 久軒이며, 建陽人(福建 출신이다. 紹定 2년(1229) 進仕가 되었으며, 淳祐 11년(1251) 浙東 江東 提點刑獄公事 兼 婺州 知州가 되었다. 이 판결문은 江東 提點刑獄公事에 역임하던 시기의 것으로 추측된다[任大熙·朴玖澈, 『譯註: 『청명집』 戶婚門 卷八』, 『中國史研究』 47(2007), 297면; 李之亮, 앞의 책, 1606면; 陳智超, 『宋史研究의 珍貴史料 - 明刻本 『名公書判清明集』 介紹 -』, 『名公書判清明集』(中華書局, 1987[2002])].

75) 『清明集』 卷9 戶婚門, 違法 交易 「卑幼爲所生父賣業」.

76) 다른 사람의 아들을 양자로 하는 것을 乞養, 過房, 立嗣, 出繼, 立後등이라 하고, 양자 쪽에서 보면 出繼라고 한다. 즉 出繼란 친부모의 房에서 나와서 양부모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이다

가 훔쳐간 田地을 돌려받고자 소송한 사건이다. 州의 僉廳과 提點刑獄司의 檢法官은 齊元龜의 소송을 패소라고 판정하였다.

그러나 提點刑獄官 蔡抗은 州의 僉廳과 提點刑獄司 檢法官의 판결이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무리 生父라고 하지만 이미 出繼하여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된 자식의 재산[田地]을 훔쳐 팔아버린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라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提點刑獄官 蔡抗은 齊元龜사건에 대하여 비록 판결이 틀리다고 생각하였지만 “轉運司의 담당사항을 침범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서 이 사건을 판결하기 어렵다”라고 하여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다시 州를 거쳐 轉運司로 소송하기를 바라고 있다. 즉 路단계에서 재산[田地]에 관한 民事안건은 轉運司에서 우선으로 심판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사건은 民事·刑事사안이 혼재되어 있는 판결문이다. 이 사건을 최종 심판하는 提點刑獄官 蔡抗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

N. 본 司(提點刑獄司)에서는 먼저 徐氏가 그 아들의 不孝를 호소한 것에 관해, 그것이 풍속교화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규명했다…… 戶婚[戶籍·婚姻]은 본 官司[提點刑獄司]에서 담당하는 바는 아니다. 州에 공문[牒文]을 보내어 즉시 追究시키어, 조문에 따라 시행하게 하라. 徐氏가 陳嘉謨에게 재가한 것은, 곧 陳嘉謨의 家人이 곧 陳므로, 陳紹祖의 집의 일에 간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陳紹祖형제는 것전에는 원래부터 母親으로서 그녀를 섬겼고, 현재 다른 기문에 시집갔다고 하더라도, 역시 (어머니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우선은 1번만 처단을 면하게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는 외에, 徐氏와 陳紹祖는 즉시 州에 가서 처분을 기다리게 한다. 원래의 서류는 州로 보낸다.⁷⁷⁾

위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徐氏가 陳嘉謨에게 재가하여 그의 처가 되었음에도 오히려 陳嘉謨를 接脚夫라고 둘러대며 전 남편의 재산

[川村康, 임대희 옮김, 『宋代에 있어서의 養子法』(서경문화사, 2005), 15면; 滋賀秀三, 『中國家族法の原理』(創文社, 1981), 110면~121면 참조].

77) 『清明集』 卷9 戶婚門, 違法 交易 「已出嫁母賣與其子物業」.

을 함부로 처분한 것이다.⁷⁸⁾ 둘째는 아무리 徐氏가 재가하였으나 본래 陳紹祖의 모친이었으므로 아들 되는 사람이 그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불효 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 提點刑獄官 蔡抗은 각각 다른 판결을 내리고 있다. 첫 번째 사안은 徐氏의 재가문제인데, “徐氏는 陳嘉謨에게 시집간 것이지, 陳嘉謨를 接脚夫로 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徐氏가 재가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提點刑獄官 蔡抗은 徐氏의 재가 문제에 대해서는 “戶婚[民事안건]에 관한 사건은 본 官司[提點刑獄司]에서 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여 판결을 내리지 않고, 州로 보내어 다시 조사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陳紹祖가 徐氏를 비난한 불효 죄[刑事안건]⁷⁹⁾에 대해서는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처단은 면하게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 사례는 提點刑獄司가 刑事 안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官司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提點刑獄司에서 民事안건을 처리하는 예도 있었는데 다음은 그에 관한 사례이다.

O.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각 관사[司]의 公文書는 朝廷 및 御史臺의 강제제출 명령을 제외하고, 동격인 路의 監司 간에 차출해서 열람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명령하여 강제제출 시키려는 것, 예를 들어 州·縣의 吏人을 파견해서 강제 집행하는 하는 것은 도리[理]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본관이 작년 겨울에 부임해서부터, 民事소송[婚田]의 소송에 관해서는 官司[轉運司]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를 고려해서, 이것을 때때로 소송을 받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이것은 州·縣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재촉하고 독려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중에는 부득이 내가 결정을 한 것도 있지만, 모두 전임자가 관계자를 官司[提點刑獄司]로 소환해서 오랫동안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부득이

78) 만약 陳嘉謨가 徐氏부인의 接脚夫라면 재산 처분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명분이 서기 때문에 이는 徐氏의 행위는 위법이 아닌 것이다.

79) 宋代 不孝죄는 刑事안건에 속하였다[屈超立, 앞의 글(각주 19); 屈超立, 임대희·서지영 역, 「전운사(轉運司)의 사법기능」, 『法學論攷』 28(2008), 621면].

그렇게 한 것이지, 주재님께 함부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朝廷이 관직을 설치한 것은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며,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화제가 있거나 물에 빠진 자를 보고 이것을 구하지 않을 자가 있을까? 일찍이 官司[轉運司]로부터 '邵元昱 사건에 대한 제님을 재촉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本司[提點刑獄司]는 轉運司의 지시가 평상시와는 달랐기 때문에 즉시 관련서류를 써서 보냈다. 이 후 다시 명령이 와서 (邵元昱 사건) 일건서류의 송부를 요구해 오자 다시 곧장 吏人으로 하여금 칩문을 송부하도록 하였다. 나는 이 사건을 취급하는데 있어 충분하지 않은 관직에 있다. 국가의 官司에 몸을 담고 있긴 하지만 관위도 낮고 인망도 없는 자 이기에 朝廷의 체제를 쉽게 폐기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일찍이 탄식하며 말한 적이 있다. “督贊[都督府參贊軍事]·侍讀·判部尙書와 같이 고위 職에 있는 자는 轉運司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만일 轉運司의 관직을 겸직한다면 朝廷의 법을 소원히 해서는 안 된다.” 督贊·尙書에는 이미 보고하였고, 轉運司에도 牒文을 보내 보고하라.⁸⁰⁾

提點刑獄司에서 轉運司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고려해서 民事소송을 받아들이자, 轉運司에서 民事소송에 관한 관련서류를 빨리 본사[轉運司]로 移送하라고 재촉하고 있다. 이러한 轉運司의 행동에 대해 提點刑獄司에서는 불만스러운 견해를 밝히고 있다. 즉 婚田에 관련된 民事소송안건에 대해서 州·縣 단계에서의 판정시행을 재촉하거나, 미결된 안건들을 수리하거나, 소송과정에서 불편함이 있을 때 提點刑獄司에서 간접적으로 受理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위 사례는 특별한 경우 提點刑獄司에서 轉運司를 대신하여 民事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음 P-①, P-②, P-③의 사례들을 통해 남송시기 提點刑獄司에서 수행한 民事기능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P-① 公擧인 사대부가 관기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유교도덕[名教]을 거역하는 죄인

80) 『清明集』 卷1 官吏門, 申牒「監司案牘不當言取索」; 『清明集』 卷1 官吏門, 申牒「監司案牘不當言取索」 번역함에 있어서, 高橋芳郎, 앞의 책, 45면~47면을 참조하였다.

이 아니겠는가? 사대부 간의 汚辱이 아니겠는가?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⁸¹⁾

P-② 다툼을 없애고, 미워하는 마음을 화해시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것이 진실로 본관이 바라는 바이다 …… 지금 즉시 程若沔, 程若涇, 程若庸은 형제가 慶弔를 함께 처리하겠다는 뜻의 약정과 無爭狀을 관사[提點刑獄司]에 제출하면, 형제간에도 반성하는 마음과 선량한 마음도 잃지 않게 되는 것이다.⁸²⁾

P-③ 본사[提點刑獄司]가 농업을 권장하고 하천개수사업을 직장하고 있고, 수리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본사[提點刑獄司]는 형벌을 확실히 해 교화를 진행시키는 것을 제일로 하고, 명분을 바로잡는 것을 우선하는 것은 당연하다.⁸³⁾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남송시기 提點刑獄司에서는 다양한 민사안건을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사대부와 기생의 혼인사건[P-①], 민간의 상례·장례 등으로 말미암은 민사 분류[P-②], 농업을 권장하고 하천개수사업과 수리 등을 결정하는 문제[P-③]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사안건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V. 南宋 行政秩序 崩壞와 提點刑獄司 機能變化의 意味

남송 초기 武臣 提點刑獄官이 등장하여 단독으로 路의 행정업무를 보았던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써 남송 초기 지방 통치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된다. 송조는 진정한 의미의 文官정치를 가장 먼저 확립하여 지식형 문관집단에 의해 가장 능률적으로 정치기구를 운영하였고, 통치 집

81) 『清明集』 卷9 戶婚門, 婚嫁 「士人娶妓」.

82) 『清明集』 卷10 人倫門, 兄弟 「俾之無事」.

83) 『清明集』 卷10 人倫門, 宗族 「恃當凌族長」.

단 내부의 모순을 조절하여 분열과 내전을 가져오지 않았다. 송조 내부의 안정은 文官정치 체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文官 중심의 정치체계가 文을 중시하고 武를 경시하는 重文輕武의 풍조를 만들었다. 따라서 武官의 지위는 매우 낮았다고 할 수 있다.⁸⁴⁾ 이러한 정치·사회 풍조 아래 武臣 提點刑獄官의 등장과 그 권한의 확대는 文臣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따라서 武臣 提點刑獄官은 곧 폐지되게 되었다. 송조의 重文輕武 정책과 文臣에 의한 武臣의 지위 침식은 武臣관료들의 능력 발휘와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고, 국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문약한 조정을 만들어 송조가 한 번도 대외적으로 武威를 떨치지 못한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남송시기 提點刑獄司의 재정 관련 기능이 향상되는 것은 남송 초기 중앙으로 더 많은 재정을 집중시키기 위해 提學常平司의 置廢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提學常平司가 폐지될 때마다 그 업무를 提點刑獄司 등 路級 監司들이 담당하게 되었고 따라서 세금부과는 路級 監司들의 중요한 직책이 되었다. 監司 중 특히 提點刑獄司의 재정 기능이 가장 많이 증가하게 되었고 본래의 기능보다는 조세를 징수하는 쪽에 치중되는 폐단도 나타나게 되었다.⁸⁵⁾ 남송은 처음부터 재정이나 조세 징수를 완전히 새롭게 조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였으며⁸⁶⁾ 국토의 면적은 축소하는 데 비해 정부의 각종 지출은 효과적으로 감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각종 세금을 늘려 중앙의 재정을 만족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중앙의 재정을 채우려고 지방의 재정을 고려하지 않게 되자 지방재정은 더욱더 곤궁해졌다. 북송 초는 중앙에서는 三司,⁸⁷⁾ 路에서는

84) 金諍, 김효민 옮김, 앞의 책, 165면~169면; 安俊光, 「北宋政治權力과 武臣官僚」, 『歷史教育論集』 제23·24합집(1999).

85) 包偉民, 『宋代地方財政史研究』(上海古籍出版社, 2001).

86) 남송 초기 당시 남방의 대부분은 반란을 일으킨 도적들의 수중에 있었는데, 고종의 군대는 거의 이러한 부대를 개편한 것이었다. 그 결과 고종은 반란은 진압하고 화의를 구하면서 혼란을 잠재우는 데 10여 년이나 보내야했다[레이 황, 권중달 옮김,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푸른역사, 2001), 400면].

87) 周藤吉之, 「北宋三司の性格」, 『宋代史研究』(東洋文庫, 1969).

轉運司,⁸⁸⁾ 그리고 州에서는 通判의 견제 아래 知州가 재정권을 각각 쥐고 있었다.⁸⁹⁾ 그런데 北宋中期 新法時代를 분수령으로 하여 중앙에서는 戶部가 부활하고 左右曹의 二分體制가 성립하였다. 지방에서도 이에 상응하여 路에서는 轉運司와 提舉常平司의 재정 분권이 성립하고, 州에서는 知州보다는 通判의 財政權이 강화되었다.⁹⁰⁾ 남송 시기에 이르면 지방의 재정분권 현상은 더욱 심화하여 轉運司 이외의 提舉常平司, 提點刑獄司 등으로 하여금 재정 관리의 업무를 맡도록 하였고, 후기로 갈수록 提點刑獄司의 재정기능이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셋째로 남송시기 提點刑獄司의 사법권한이 확대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정에서는 路 단위에서 婚田의 업무는 일차적으로 轉運司에서 刑訟의 업무는 일차적으로 提點刑獄司에서 심판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사법권을 분산시키고자 함이라 생각되는데 提點刑獄司 뿐만 아니라 轉運司에도 일부의 사법권한을 부여하여 사법심판의 명확성을 제고시키고 안전치리서 오류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서로 감시하고 견제시키려는 것이라 思料된다. 그러나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특별한 경우 提點刑獄司에서 轉運司의 담당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남송시기 提點刑獄司의 사법권한이 확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남송시기에 이르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남송 후기에 이르면 정치·경제·사회의 변화에 의해 다양한 民事 관련 법률이 생겼다.⁹¹⁾ 즉 농업생산과 상품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토지매매 등을 다루

88) 青山定雄, 「唐宋時代の轉運使及び發運使」, 『唐宋時代の交通と地誌地圖の研究』(吉川弘文館, 1963).

89) 宋代 地方州縣의 조세수입은 軍資庫에 넣었는데, 바로 이 軍資庫를 通判이 관리함으로써 知州가 財政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었다[金榮濟, 「南宋의 地方財政에 對해서 - 浙東路 慶元府(明州)의 財政收支를 中心으로 -」, 『中國史研究』 21(2002), 147면 각주 재인용].

90) 金榮濟, 앞의 글.

91) 屈超立, 「宋代民事案件의 上訴程序考述」, 『現代法學』(2003-02), 92면; 陳志英, 「社會變革與宋代民事法的發展」, 『河北法學』(2006-05), 71면; 李鍾吉, 「中國傳統社會의 民事法發展過程에 對한 一 檢討」, 『中國史研究』 48(2007), 236면.

는 법률제도가 신속히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전통적으로 宗族을 위주로 하는 사회생산방식이 붕괴하면서 새로운 사회경제관계가 생겨났다. 이러한 이유로 民事 관계가 더욱 복잡화되고 民事 분쟁이 대량화 되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가족제가 붕괴⁹²⁾함에 따라 가족 간에 재산 다툼 분쟁이 많아지게 되었으며, 부모·자녀·형제·자매지간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걸기도 하고, 단지 개인의 이익을 피하여 얼마 안 되는 땅을 가지고 서로 소송하여 그 소송이 몇 년 이상 걸리는 사건⁹³⁾도 많았다. 이렇듯 民事 사건의 증가는 提點刑獄司의 각종 民事 안건 처리 기능이 증가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것이다.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南宋 시기 提點刑獄司는 北宋과 비교하면 財政, 司法 등에 이르는 기능이 향상 되어 지방 행정기관으로써 그 위상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提點刑獄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이며, 남송시기 행정질서의 붕괴로 말미암은 지방 행정체계의 변화가 각 監司들의 기능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남송시기 提點刑獄司를 비롯한 각 監司의 기능이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남송시기 이르면 路級 監司 관원들의 겸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송대 전체를 살펴보면 路級 監司의 겸직현상은 결코 보기 드문 현상은 아니었는데, 남송 중 후반기에 이르면 官員 한 명이 수많은 업무를 겸하게 되고 그 겸임의 시간은 북송보다 더욱 길어지게 되었다. 남송 寧宗 嘉定 2년(1209)에 한 사람의 관원에게 京西路의 轉運司, 提舉常平司, 提點刑獄司의 업무를 겸하도록 하여⁹⁴⁾ 民政, 司法, 財政의 권한이 한곳에 집중되었으며, 理宗 紹定 3년(1230)에 이르면 한 사람이 다섯 가지의 직무를 맡게 되는 상황도

92) 陸貞任, 『宋代 分割相續과 家族』, 『東洋史學研究』 83(2003); 陸貞任, 『송대 가족과 재산 상속』, 『동양사』(한국지식지형도, 2007).

93) 『清明集』 卷6 戶婚門, 爭田業, 「兄弟爭業」.

94) 『宋史』 卷403 列傳 第162 趙方傳 “提舉京西常平兼轉運判官, 提點刑獄”; 李之亮, 앞의 책, 1383면, 1906면.

발생하게 된다.⁹⁵⁾ 이러한 監司들의 겸직은 남송 후기에 이르면 더욱 보편적인 상황이 되었고 따라서 監司의 직권은 더욱 확대되어 다방면에 걸쳐 막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⁹⁶⁾

두 번째 이유는 남송 시기에 이르면 더욱 빈번하게 路의 監司들이 연합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정에 상주하여 자신들의 의사를 밝혀나갔다는 점이다. 즉 監司들은 이러한 연합행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한을 넓혀 나갔던 것이다. 특히 재해 시 모든 監司가 연합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법률조항에도 명시되어 있었다.

Q. 재해를 입은 각 路를 책임 진 관원으로서 安撫司에서는 직접 내려가 난민들의 형편을 자신의 몸으로 감수하고 굶어 살피면서 합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轉運司에서는 상황점검 및 구호물자 발급, 도로망과 주택건설을 면밀히 감독할 것이며, (軍糧공급이 결핍한 상황에 처한 곳에서는 되도록이면 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바란다), 常平司[提舉常平司]에서는 糶給借貸를, 提點刑獄司는 경각성을 높여 재난을 기회로 삼고 망동하는 불량배들이 없도록 살피고 단속해야 할 것이다. 만약 상기한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에는 서로 감시하고 적발할 수 있다.⁹⁷⁾

위의 법률조항에서 살펴보았듯이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安撫司, 轉運司, 提舉常平司, 提點刑獄司 등의 각 監司들은 서로 연합하여 재해극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監司들은 연합하여 조정에 상주하는 행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중앙에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다음은 福建 路의 轉運司와 提點刑獄司가 연합하여 조정에 상주한 사례이다.

95) 『宋史』 卷419 列傳 第178 陳韓傳 “知南劍州, 提舉汀州, 邵武軍兵甲公事, 福建路兵馬鈐轄, 同共措置招捕盜賊兼福建路招捕使. 未幾, 加提點刑獄”; 李之亮, 앞의 책, 1732면.

96) 戴建國, 앞의 글(각주 20); 屈超立, 앞의 글(각주 19); 屈超立, 임대희·서지영 역, 「전운사(轉運司)의 사법기능」, 『法學論叢』 28(2008); 王曉龍, 앞의 글(각주 60).

97) 『慶元條法事類』 卷7 「監司知通按舉」, “諸災傷路分, 安撫司體諒措置, 轉運司檢放展鬮, (軍糧闕乏, 令聽以省計通融應副), 常平司糶給借貸, 提點刑獄司覺察妄濫, 如或違戾, 許互相按舉”

R. 光宗 紹熙 2年(1191)의 4월, 福建路를 담당하고 있는 轉運司와 提刑司[提點刑獄司]에서 말하기를 “汀州 寧化縣에 홍수가 범람하여 百姓 18인이 익사했고 많은 가옥이 큰물에 밀려갔다”고 했다. 이에 조정에서 조서를 내려 “福建路를 맡고 있는 모든 監司[諸司]에서는 홍수의 피해를 입은 軍民들을 더욱 실질적으로 진휼하고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다시 마련하도록 지원 해 주어야한다”라고 했다.⁹⁸⁾

위 Q, R 사례에서 보았듯이 재해 발생 시, 路級의 모든 監司들의 연합 행동은 반드시 필요하였고 이러한 행동으로 지방의 재해를 구제하였다.

남송 후기에 이르면 戰亂으로 황폐해진 지방사회를 돌보는 과정에서 각 監司들의 聯合行動은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즉 監司들은 연합하여 변란집단을 퇴치하고 각종 재해에 대항하였으며 전쟁 시 군대를 이끌었다. 監司들은 이러한 연합 행동을 통해 정책 결정에서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업무처리에 신속성을 가함으로써 지방행정효율을 더욱 높여나갔던 것이다. 또한, 각 監司의 해당 長官들은 이러한 연합행동을 통해 지방 사무에서 자신들의 행정 지도권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정리하면 남송시기 提點刑獄司를 비롯한 路의 監司들의 연합 행동은 더욱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이러한 현상은 해당 官員들의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처리권한 증가로 이어진다. 監司들이 독립적으로 지방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지방으로 권력이 점점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提點刑獄司제도에도 영향을 끼쳐 남송시기에 이르러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즉 북송시기 司法과 監察 등에 치우쳐 있던 기능이 남송시기에 이르면 司法, 監察, 治安, 軍事, 財政 등 여러 분야의 기능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남송시기 행정질서의 붕괴는 路의 提點刑獄司를 비롯한 監司들의 기능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혼란한 국가정세 속에서 一路의 民政, 司法, 財政, 兵權의

98) 『宋會要輯稿』瑞異 3-17, “光宗 紹熙 二年 四月, 福建路 轉運·提刑司言: ‘汀州 寧化縣洪水泛漲, 浸死百姓一十八人, 推去屋宇等’ 朝廷下詔: ‘令福建路諸司將應被水軍民更切賑恤, 毋令失所’”

권한을 한 사람의 장관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흩어진 힘을 모으기 유리하고 전쟁 시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등 지방 행정에서 더욱 효율적이었다는 이점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지방 監司들은 상호 연합행동을 통해 권한을 넓혀나갔고, 또 한 사람이 여러 監司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는 상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이다.

宋朝는 비록 唐朝 보다 더욱 발달된 고도의 중앙집권을 이루었지만 건국 초부터 멸망할 때까지 외환과 침략이라는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요나 금과 같은 소수민족 정권과 오랫동안 중국대륙질서를 병존하여 이끌어 왔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계급과 민족 간의 모순은 나날이 첨예해져갔다. 따라서 농민봉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송의 통치를 흔들게 된다. 즉 대내적으로는 농민봉기를 진압하기에 급급하였고 대외적으로는 금과 굴욕적인 화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말미암아 송나라는 초기부터 행정질서를 완비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다. 북송 시기 提點刑獄司의 계속되는 置廢상황과 남송 시기 提點刑獄司의 기능변화는 이러한 행정 질서의 미비함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V. 맺음말

송 초기 통치자들은 당 말과 5대의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통해 경제제도와 사회질서가 안정되기를 원하였고 따라서 송의 중앙집권 강화정책을 지지했다. 송은 법에 의한 통치를 중시하던 시대였으며, 과거의 경험과 시대적 요구를 기초로 하여 提點刑獄司라는 국가 차원의 사법 기구를 두어 통치하였다는 점은 중국역사상 다른 왕조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송대 지방 路의 상위관청인 提點刑獄司의 특수성과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남송은 그 설립 초기에서부터 멸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전쟁의 위협에

처해있었으며 이 때문에 政治, 經濟, 軍事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은 지방 통치에도 영향을 미쳐 監司의 역할과 그 양상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즉 지방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관사의 조직적인 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監司는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여 전쟁 시 민첩하게 군사를 움직였어야 했고 군비를 마련하는 것 또한 監司들의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따라서 지방에 더욱 많은 권력을 집중시켜나갔고 이러한 정책은 路級 監司 및 提點刑獄司의 기능이 변화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남송시기 특히 후반기로 가면서 安撫司, 轉運司, 提點刑獄司, 提舉常平司 등의 監司들이 지방을 分治 하였던 그 원칙은 타파되어 갔던 것으로 思料된다.

宋代 提點刑獄司 설치로 인해 지방사법 질서의 공정성이 보다 높아졌으며 나아가 송조 법제발달을 촉진시켰다. 또한 轉運司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권력은 提點刑獄司 설치 이후 서서히 분화되어 갔으며 이러한 행정질서의 변화는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살펴보았듯이 북송시기 지속되는 提點刑獄司의 置廢현상과 南宋代 이르러 다양한 기능 변화는 송조 행정질서가 북송 초기부터 불안정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송조는 당조 보다 더욱 발달된 고도의 중앙집권을 이루었지만 전국 초부터 멸망할 때까지 외환과 침략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여 그 기능은 다하지 못하였던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1. 사료

『建炎以來系年要錄』, 中華書局, 1985.

『慶元條法事類』, 新文豐出版社, 民國65(1976).

- 『名公書判清明集』, 中華書局, 1987(2002).
 『文獻通考』, 新興書局, 民國48(1959).
 『續資治通鑑長編』, 中華書局, 1995.
 『宋大詔令集』, 鼎文書局, 民國61(1972).
 『宋史』, 中華書局, 1995.
 『宋會要輯稿』, 世界書局, 民國53(1964).
 『太平治迹統類』, 臺灣商務印書館, 民國72(1983).

2. 저서

- 金榮濟, 『唐宋 財政史—租稅를 중심으로—』, 신서원, 1995(2005).
 김원중, 『중국문화사』, 을유문화사, 2001.
 金 諤, 김효민 옮김, 『중국과거문화사』, 동아시아, 2003.
 島田正郎, 임대희 외 3인 옮김, 『아시아법사』, 서경문화사, 2000.
 레이 황, 권중달 옮김,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 푸른역사, 2001.
 申採湜, 신채식 저작집 I 『宋代官僚制研究』, 한국학술정보(주), 2008.
 _____, 『宋代官僚制研究—宋史列傳 分析을 통하여—』, 三英社, 1981.
 장국화, 임대희 외 옮김, 『중국법률사상사』, 아카넷, 2003.
 張晉藩, 임대희 외 옮김, 『중국법제사』, 소나무, 2006.
 제임스 류, 이범학 옮김, 『왕안석과 개혁정책』, 지식산업사, 1992.
 조복현, 『송대 관원의 봉록제도』, 신서원, 2006.
 중국사학회 엮음, 강영매 옮김, 『중국역사박물관』, 범우사, 2004.
 川村康, 임대희 옮김, 『宋代에 있어서의 養子法』, 서경문화사, 2005.
 Ann Paludan, 이동진·윤미경 옮김, 『중국황제』, 갑인공방, 2004.
 Chris Peers, 황보종우 옮김, 『전쟁으로 보는 중국사』, 수막새, 2005.
 John W. Chaffee, 양중국 옮김, 『송대 중국인의 과거생활—배움의 가시밭길—』, 신서원, 2001.
 賈玉英, 『宋代監察制度』, 河南大學出版社, 1996.
 龔延明, 『宋代官制辭典』, 中華書局, 1997.

- 郭東旭, 『宋代法制研究』, 河北大學出版社, 2000.
- 戴建國, 『宋代法制初探』, 黑龍江人民出版社, 2000.
- 戴揚本, 『北宋轉運使考述』, 上海古籍出版社, 2007.
- 李之亮, 『宋代路分長官通考』, 巴蜀書社, 2003.
- 徐道隣, 『中國法制史論集』, 志文出版社, 1975.
- 葉孝信, 『中國民法史』, 上海人民出版社, 1994.
- 王雲海, 『宋代司法制度』, 河南大學出版社, 1992.
- 王曉龍, 『宋代提點刑獄司制度研究』, 人民出版社, 2008.
- 張晉藩, 『中國法制通史·第五卷·宋代法制』, 法律出版社, 1999.
- 包偉民, 『宋代地方財政史研究』, 上海古籍出版社, 2001.
- 高橋芳郎, 『譯註 名公書判清明集—官吏門·賦役門·文事門一』, 北海道大學出版會, 2008.
- _____, 『譯註 名公書判清明集 戶婚門: 南宋代の民事的紛争と判決』, 創文社, 2006.
- 梅原郁, 『宋代官僚制度研究』, 同朋舍, 1985.
- 滋賀秀三, 『中國家族法の原理』, 創文社, 1981.
- McKnight Brian E, *Law and order in Sung China*,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2.

3. 논문

- Carol G. S. Tan, 김진경 역, 「清末 訴訟의 再考」, 『법을 통해 본 중국사』, 중국사학회 제9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2008.
- 高橋芳郎 임대희 譯, 「名公書判清明集」, 『法史學研究』 27, 2003.
- 高爽林, 「宋代의 지배계급—관료계급과 形勢戶를 중심으로—」, 『慶北史學』 4, 1982.
- 屈超立, 임대희·서지영 역, 「전운사(轉運司)의 사법기능」, 『法學論攷』 28, 2008.
- _____, 「南宋民事審判中的「斷由」制研究」, 『中國史研究』 58, 2008.
- 金榮濟, 「南宋의 地方財政에 對해서—浙東路 慶元府(明州)의 財政收支를 中心으로—」, 『中國史研究』 21, 2002.
- _____, 「唐·宋代 上供의 증대과정—특히 宋代의 常平倉·和買·和糴 등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36, 1991.

- 金榮濟, 「宋代 發運使의 役割과 그 地位의 變化」, 『中國史研究』 50, 2007.
- _____, 「王安石 新法과 地方財政—北宋代 財政集權의 地域差 問題와 關聯하여—」, 『東洋學』 40, 2006.
- 金容完, 「南宋 初期의 民間 武裝集團 研究—紹興 11年 以前의 反政府集團을 中心으로—」, 『湖西史學』 25, 1998.
- _____, 「南宋 初期의 變亂集團에 關한 研究—鍾相·楊么集團을 中心으로—」, 『인문학 연구』 28, 2001.
- 김호동, 「북아시아 유목국가의 군주권」, 『東亞史上的 王權』, 한울아카데미, 1993.
- 朴淳坤, 「名公書判清明集을 통해 본 송대 地方胥吏의 모습」, 『法史學研究』 31, 2005.
- 朴永哲, 「譯註: 宋史刑法志(Ⅰ)」, 『中國史研究』 19, 2002.
- 배숙희, 「南宋初 對金關係의 變化와 河南·陝西 地域」, 『중국학연구』 40, 2007.
- 서지영, 「송대 提點刑獄司에 대한 연구동향」, 『法史學研究』 38, 2008.
- 小口彦太, 임대희 역, 「전통중국의 법제도」, 『역사교육논집』 16, 1991.
- 申採湜, 「宋 이후 皇帝權」, 『東亞史上的 王權』, 한울아카데미, 1993.
- _____, 「宋代 文臣官僚의 陞進에 대하여」, 『東洋史學研究』 8, 1975.
- _____, 「宋代官僚制研究—宋史列傳 分析을 통하여—」, 東國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81.
- _____, 「宋代史 연구의 문제와 새로운 방향 모색」, 『東洋史學研究』 50, 1995.
- _____, 「南宋前期의 胥吏」, 『동국사학』 27, 1993.
- _____, 「宋代 胥吏의 政治의 機能」, 『中國史研究』 6, 1999.
- 安俊光, 「北宋政治權力과 武臣官僚」, 『歷史教育論集』 제23·24합집, 1999.
- 陸貞任, 「송대 가족과 재산 상속」, 『동양사』 한국지식지형도, 2007.
- _____, 「宋代 分割相續과 家族」, 『東洋史學研究』 83, 2003.
- 李玠夷, 「宋 徽宗代 紹述新政의 挫折과 私權의 皇權強化」, 『東洋史學研究』 53, 1996.
- 이근명, 「南宋時代 兩浙의 人口와 社會變化—麥作的 普及 問題를 中心으로—」, 『中國研究』 28, 2001.
- 李錫炫, 「譯註: 宋史刑法志(Ⅱ)」, 『中國史研究』 49, 2007.
- _____, 「中國의 宋史 연구동향」, 『한국중세사연구』 20, 2006.
- 李鍾吉, 「中國傳統社會의 民事法發展過程에 대한 一 檢討」, 『中國史研究』 48, 2007.
- 李 鉉, 「宋初期 發運司에 관한 一問題—端拱年間の 置廢原因을 中心으로—」, 『釜大

- 史學』4, 1981.
- 任大熙·朴致澈,「譯註『清明集』「戶婚門」卷八」,『中國史研究』47, 2007.
- _____,「譯註『清明集』「戶婚門」卷七上」,『中國史研究』41, 2006.
- _____,「譯註『清明集』「戶婚門」卷七下」,『中國史研究』42, 2006.
- 任大熙·林炳德·金仙德,「韓國에서의 中國 法史研究의 現況과 展望」,『歷史教育論集』36, 2006.
- 任大熙,「譯註『清明集』「戶婚門」卷四」,『中國史研究』33, 2004.
- _____,「譯註『清明集』「戶婚門」卷五」,『中國史研究』34, 2005.
- _____,「譯註『清明集』「戶婚門」卷六(上)」,『中國史研究』37, 2005.
- _____,「譯註『清明集』「戶婚門」卷六(下)」,『中國史研究』38, 2005.
- 滋賀秀三,「中國의 傳統的인 法執行 方式에 關한 考察」,『사법행정』21, 1980.
- 張南植,「北宋初期의 禦史의 '分路按獄」,『忠南史學』3, 1988.
- 趙東元,「宋代州縣의 經濟統計」,『釜大史學』21, 1997.
- 曹福鉉,「宋代 官員의 公使錢 研究」,『東洋史學研究』81, 2003.
- 賈玉英,「宋代提舉常平司制度初探」,『中國史研究』, 1997-03.
- 郭東旭,「論南宋的越訴法」,『河北大學學報』, 1988-03.
- 屈超立,「論宋代轉運司的司法職能」,『浙江學刊』, 2003-04.
- _____,「宋代民事案件的上訴程序考述」,『現代法學』, 2003-02.
- _____,「宋代地方行政管理制度改革簡論」,『西南民族大學學報』, 2004-11.
- 戴建國,「宋代的提點刑獄司」,『上海師範大學學報』, 1989-02.
- 戴揚本,「北宋初期轉運使制度的演變」,『中華文史論叢』, 2007-01.
- 李 曉,「宋朝江淮荆浙發運司的政府購買職能」,『中國社會經濟史研究』, 2004-02.
- 傅日晶,「試論宋代司法制度的發展」,『學術探索』, 2006-03.
- 徐東升,「論宋代的監司關係—以轉運、提點刑獄和提舉常平司爲中心」,『江西社會科學』, 2008-05.
- 石 濤,「北宋提點刑獄司研究」,『聊城大學學報』, 2003-01.
- 宋 炯,「宋代提舉常平司的沿革與財政體系的變化」,『安徽史學』, 2002-01.
- 餘 蔚,「宋代地方行政制度研究」,復旦大學博士學位論文, 2003.

- 王麗, 「北宋轉運使的設置問題探討」, 『河南大學學報』, 2001-06.
- 王曉龍, 「宋代提點刑獄司制度研究」, 河北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 , 「從提點刑獄司制度看宋代“路”之性質」, 『中國歷史地理論叢』, 2008.
- 牛傑, 「宋代好訟之風產生原因再思考—以鄉村司法機制為中心」, 『保定師範專科學校學報』, 2006-01.
- 祖慧, 「論宋代胥吏的作用及影響」, 『學術月刊』, 2002-06.
- 陳志英, 「社會變革與宋代民事法的發展」, 『河北法學』, 2006-05.
- 陳智超, 「宋史研究的珍貴史料—明刻本『名公書判清明集』介紹」, 『名公書判清明集』, 中華書局, 1987(2002).
- 河上光一, 「皇帝獨裁權の強化と官僚制」, 『宋代の經濟生活』, 吉川弘文館, 1941(1966).
- 黃純豔, 「論宋代發運使的演變」, 『廈門大學學報』, 2003-02.
- 黃玉環, 「提點刑獄公事與審刑院 禦史台推勘官」, 『貴州民族學院學報』, 2005-05.
- 宮崎市定, 「宋元時代の法制と裁判機構」, 『アジア史研究』 4, 1957.
- 周藤吉之, 「北宋三司の性格」, 『宋代史研究』, 東洋文庫, 1969.
- 青山定雄, 「唐宋時代の轉運使及び發運使」, 『唐宋時代の交通と地誌地圖の研究』, 吉川弘文館, 1963.

<Abstract>

The Function Change and the Meaning of Je-jeom-hyeong-ok-sa(提點刑獄司) in Sung(宋) China

Seo, Ji-Young*

The Northern Sung China(北宋) time, Je-jeom-hyeong-ok-sa(提點刑獄司) was changed permanent establishment after flow establishment and process of abrogation sometimes. Displayed important influence strengthening centralization structural order of the emperor center as center and local contact resources.

But, administration order was collapsed Southern Sung China(南宋) time and therefore, Je-jeom-hyeong-ok-sa function is changed. First, Mo-sin(武臣) Je-jeom-hyeong-ok-guan(提點刑獄官) achieved local administration business individually.

Second, if reach at Southern Sung China time, Je-jeom-hyeong-ok-sa finance connection function increased. Third, power of administration of justice quarter was expanded. Sung China(宋) of administration of justice order from Je-jeom-hyeong-ok-sa establishment fairness more rise and goes forward and Sung China legislation developed.

The Northern Sung China time, Je-jeom-hyeong-ok-sa establishment and abrogation developing appeared continuously, and reaches at South Sung China time and various function change appeared. This shows truth that Sung China administration order did wobble from Northern Sung China early.

*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Im, Dae-Heui)

Sung China(宋朝) accomplished highly centralization that is developed more more than Tang China(唐朝). But, because did not to escape circumstance of the war until Sung China falls from establishment of a country early, centralization order did not display function properly.

[Key Words] Sung China, Je-jeom-hyeong-ok-sa

접수일 : 2009.8.5, 심사일 : 2009.9.24~10.5, 게재확정일 : 2009.10.12